

#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 공공시장 진출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8 - 152호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공공시장 진출 역량강화 컨설팅(3차)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 경영컨설팅 지원한도를 초과한 기업, 2018년 컨설팅 수진기업,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전략 교육 등
- 공공입찰을 위한 사업포트폴리오 구성, 영업전략 수립 및 코칭
- 입찰자격서류 구비 여부 검토, 필요서류 준비 지원
- 공공시장 수요 조사·분석을 통한 바이어 및 거래선 발굴 지원
- 사업제안서, 제안서 작성 방법, PT 방법 코칭

수행기관: (주)비즈케어

기타

- 수진기업별 방문 컨설팅 제공
- 사업비의 10~40%는 수진기업 자부담임

2018. 7.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1 신청 접수

## □ 신청·접수

- 기간: 공고일 ~ 8. 1.(수)까지
- 방법: 우편 신청 및 방문 신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8층 판로지원팀 표준형  
컨설팅 담당자)

※ 신청 방법은 “컨설팅 신청 매뉴얼”(별첨) 참조, 우편 접수는 마감일(18시) 소인분에 한해 인정

## □ 지원대상 및 내용 :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택 1)

구 분	지 원 대 상	컨 설 팅 내 용
표준형	(예비)사회적기업	공공시장 진출 지원
		공공시장 조달상품 등록
		재무관리 역량강화

※ 표준형의 경우 접수 즉시 사전진단 착수 예정이므로 빠른 신청 요망

## □ 공공시장 진출 역량강화 컨설팅

- 상품/서비스 및 홍보마케팅, 판로 등 기업 현황에 대한 진단, 분석
-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해 개선 과제 도출 및 개선 방향 코칭 지원
- 진출 가능한 공공시장 수요 조사·분석을 통한 바이어 및 거래선 발굴
- 공공시장에 적합한 사업포트폴리오 구성, 영업전략 수립 및 코칭 지원
- 공공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격서류 구비 여부 검토, 필요서류 준비 지원
- 공공시장 대상 사업제안서, PT 작성 지원, 제안 발표 코칭 지원

## □ 지원제외 대상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 자율형과 표준형 컨설팅 당해 중복지원 불가
- **당해연도 경영컨설팅 기 수진기업**
- 제6조에 따른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기업
  - \* 최대 5회(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000만원 한도)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기업
-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컨설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
- 타 정부지원사업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 □ 선정·평가

구분	선정 절차	비고
표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컨설팅기관 선정 → 신청·접수 → <b>선정 평가</b> → 선정·협약</li> </ul>	서면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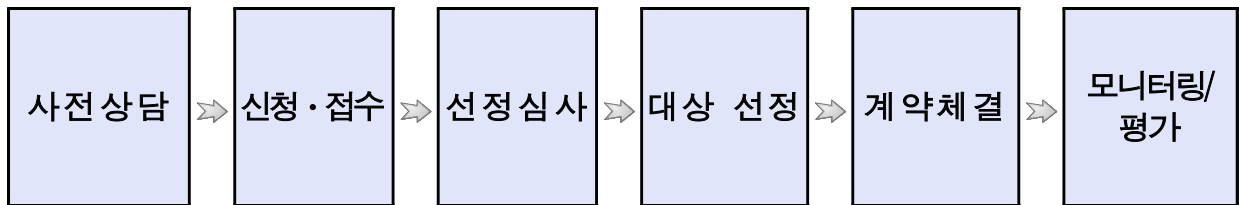
## □ 지원 조건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비율	수행기간
표준형	최대 5회 ※금액한도 없으나,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계약(신청)금액에 따라 10~40% ※기업별 분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6개월

□ 기업부담금 산출방식

총사업비	비율	최대 기업부담금액	산출방식
500만원 이하	10~40%	50만원	컨설팅 계약금액 × 10%
500만원 ~ 1,500만원 이하		250만원	{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20%)}
1,500만원 ~ 2,500만원 이하		550만원	{2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30%)}
2,500만원 초과		산출식에 따름	{550만원 + (2,500만원 초과금액 × 40%)}

□ 추진 절차



□ 문의처 및 연락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전화) 031-697-7832,7835 (팩스) 031-697-7854 (이메일)consulting@ikosea.or.kr	

\*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 참고 1

## 경영컨설팅 제도 개요(2018)

유형	표준형(구 특화형)	자율형																		
		지속성장형	공동형																	
지원내용	기본적인 경영현안해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화된 컨설팅 제공	경영·기술 전 분야의 심화된 경영과제와 현안 문제 해결지원	동종·유사 업종 또는 지역 공동의 경영 현안 해결지원																	
선정방식	주제	분야별 지정	수요자 선택																	
	컨설팅기관	분야별 지정	수요자 선택 (진흥원 Pool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공동형의 경우 별도제안 가능																	
	프로세스	컨설팅기관 지정→사전진단→집체교육(워크숍)→서면평가→개별컨설팅	사전상담→컨설팅기관 매칭→대면평가→선정→개별(공동)컨설팅																	
	선정심사	사전진단과 집체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진행	컨설팅주제-컨설팅기관-컨설팅계획을 바탕으로 대면평가 진행																	
지원범위	3 ~ 10백만원 내외	제한없음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5회(연간 1회 지원 제한)</li> <li>-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000만원 이내로 지원금 지급</li> </ul>																			
기업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총사업비</th> <th>비율</th> <th>최대 기업 부담금액</th> <th>산출방식</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 rowspan="4">10~40%</td> <td>50만원</td> <td>컨설팅 계약금액 × 10%</td> </tr> <tr> <td>500만원 ~ 1,500만원 이하</td> <td>250만원</td> <td>{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20%)}</td> </tr> <tr> <td>1,500만원 ~ 2,500만원 이하</td> <td>550만원</td> <td>{2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30%)}</td> </tr> <tr> <td>2,500만원 초과</td> <td>950만원</td> <td>{550만원 + (2,500만원 초과금액×40%)}</td> </tr> </tbody> </table>			총사업비	비율	최대 기업 부담금액	산출방식	500만원 이하	10~40%	50만원	컨설팅 계약금액 × 10%	500만원 ~ 1,500만원 이하	250만원	{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20%)}	1,500만원 ~ 2,500만원 이하	550만원	{2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30%)}	2,500만원 초과	950만원	{550만원 + (2,500만원 초과금액×40%)}
총사업비	비율	최대 기업 부담금액	산출방식																	
500만원 이하	10~40%	50만원	컨설팅 계약금액 × 10%																	
500만원 ~ 1,500만원 이하		250만원	{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20%)}																	
1,500만원 ~ 2,500만원 이하		550만원	{2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30%)}																	
2,500만원 초과		950만원	{550만원 + (2,500만원 초과금액×40%)}																	